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4호서식] <개정 2015.9.23.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(www.cq.or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술자격증 []재발급 []정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성명	한글: 영문: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(-) 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		

자격증번호		발급 연월일	
자격종목 및 등급		분실 연월일	
신청사유			

「전파법 시행령」 제113조·제114조·제123조제3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([]재발급 []정정)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증명사진(2.5센티미터×3센티미터) 1장 2. 기술자격증(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정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99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 및 검토	→	결재	→	재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